

제 호

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

1. 기관·단체의 명칭:
2. 기관·단체의 대표자:
3. 소재지:

「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·단체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